[산업간호와 법]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[시행 2011, 7, 1] 「고용노동부령 제2호, 2010, 8, 9, 일부개정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◇ 개정이유

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,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교섭단위의 결정 절차 등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법률 제9930호, 2010. 1. 1. 공포, 2011. 7. 1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2030호, 2010. 2. 12. 공포, 2011. 7. 1. 시행) 이 개정됨에 따라,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시 제출 서류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구 절차,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의 노동위원회에의 신청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 내용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서류를"을 "규약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"(변경사항등의 신고)"를 "(변경사항의 신고)"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하고자 하는"을 "하려는"으로, "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"를 "별지 제1호 서식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(종전의 제2호) 중 "서류"를 "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"로 한다.

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교섭의 요구)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"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- 2.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3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(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

제10조의3(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) ① 영 제14조의3제1항에서 "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 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영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- 2. 교섭을 요구한 일자
- 3.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
-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영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
 -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제10조의4(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) ① 영 제14조의5제1항에서 "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,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
- 2. 영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일자
- 3.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(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)의 수
- 4.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 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
 - ② 영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
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
- 2.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제10조의5(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) ①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영 제14조의7제4항에서 "조합원 명부(조합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
 - 1 노동조합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
 - 가. 조합워 명부(조합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노동조합 가입워서
 - 나. 조합비 납부 증명서
 - 다. 노동조합 규약 사본
 - 라,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
 - 마. 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2. 사용자에게 제출 요구하는 서류
 - 가. 근로자 명부
 - 나.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근로자 명단과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
 - 다.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사본
 - 라. 그 밖에 해당 교섭단위에 소속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10조의6(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기준) ①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고 그 노동조합 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② 노동위원회는 영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조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7(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) ① 영 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8(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)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11제1항에 따라 교섭단 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, 고용형태,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제10조의9(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) ① 법 제29조의4제2항 및 영 제14조의12제1항에 따라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려는 노동조합은 별지 제7호의9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서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노동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